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0일 월요일 음 1월 17일 (9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8℃, 낮 최고 기온은 13~14℃의 분포를 보이며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1.0~2.5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0%
0%	성 산	0%
20%	고 산	0%
0%	서귀포	0%

	해뜸 07:24 / 해짐 18:13	달뜸 19:20 / 달짐 08:10
물때	만조 11:42 / 23:38	간조 05:28 / 18:12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7/15℃
모레	흐리고 비	11/17℃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태국 쇼핑몰서 총기난사… 최소 20명 사망

한국인 8명 무사 탈출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한 터미널 21 코라트 몰.

태국 북동부에서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군인 1명이 부대와 쇼핑몰 등에서 총기를 난사, 최소 2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8일 오후 3시30분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250㎞ 떨어진 나콘랏차시마시의 인근 한 군부대 내에서 시작됐다.

짜끄라판 톰마(32) 선임 부사관이 부대 지휘관과 지휘관 장모, 동료 등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탈취했다. 이어 짜끄라판은 군부대에서 훔친 군용 차량을 몰고 오후 6시쯤 시내 대형 쇼핑몰인 '터미널 21 코라트 몰'에 도착했고, 입구에서 기관총을 난사한 뒤 쇼핑몰 안으로 진입해 일부 손님을 인질로 잡고 군경과 대치했다.

총격범은 9일 오전 9시쯤 쇼핑몰 안에서 군경에 의해 사살됐다. 이 때 인질로 잡혔던 8명도 구조됐는데, 일부는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최소 20명이 숨졌고 42명이 부상했다고 태국 당국이 밝혔다.

사건 당일에는 현지 불교 명절을 맞아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 쇼핑몰 4층에 있던 한국인 8명도 현지 경찰에 의해 무사히 탈출했다고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토지 매매 대금을 둘러싼 논쟁이 사건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제주 코로나 초기 대응 능력 '위험' 그 자체였다

고 대 로
행정사회부장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이틀째 80명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희생자가 늘고 있으나 9일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기존 30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줄어들어 사태 수습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다.

국내 상황도 희망적으로 변하고 있어 다행이다. 국내 환자 대부분이 감염 초기에 발견돼 신속하게 치료를 받고 호전되고 있다.

국내에서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에는 중증 질환자가 없어 퇴원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감염위기 국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지난달 제주를 다녀간 50대 중국인 여성 확진자에 의한 2차 감염이 우려됐으나 현재까지 감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기 대응 수준은 한마디로 '위험' 그 자체였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유관기관으로부터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제주에 온 중국인 관광객 5명이 26일 중국으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일본 여행후 제주를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려던 중국인 4명도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제주도는 즉각 입국 거부 사유와 제주 여행 동선 파악, 장기체류에 대비한 관리 및 역할 분담 등을 수립해야 하지만 '우왕좌왕'으로 일관했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 제주로 들어왔고 항공편 동승자가 몇 명인지, 입국 금지 사유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29일까지도 확인하지 못했고 제주시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로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런 제주도와 달리 질병관리본부는 29일 "내부적으로 알아보니 26일 중국인 5명이 제주에서 중국 닝보를 가려고 했는데 닝보쪽 세관이 입국을 거부해서 가지 못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후 본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 '입국 거부' 사실이 나가자 제주도는 다음날 뒤늦게 "애초 이들 5명은 중국 정부가 입국 자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주제주총영사관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체류하는 이유는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국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비판 여론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무적인 답변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이를 맹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선 '잘못된 정보'로 판정해 버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제주에서 중국 국적기를 이용해 중국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들 우한 출신 중국인 관광객 5명이 지난달 31일 새벽 광저우로 입국했고 일본에서 제주를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려던 중국인 관광객 4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간(최장 14일)이 끝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 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초기 제주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심각성 인지수준과 위기대응 능력이 어느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열린마당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강 성 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지난 설날 연휴에 강원도 다가구주택 불법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불법 숙박업소 근절의 필요성을 느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여행 상품이 소개되면서 펜션, 민박 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 추세다. 2019년도 말, 도에 신고된 숙박시설은 5600여개소이다.

최근에는 임차 원룸이나 오피스텔, 미신고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을 숙박공유사이트,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불·탈법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분쟁과 시설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8월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신설, 불법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행정의 단속을 비웃듯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에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펜션, 민박 등의 사전 예약이 보편화되었음에도 숙박업(민박) 신고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숙소 예약 시 업소정보를 알 수 있는 신고필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불법 영업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하며, 성범죄자는 숙박업소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실에 맞는 관련규정 개정 등의 제도개선으로 미신고 숙박업소 불법 영업을 퇴출해 공정한 숙박영업 질서가 확립됨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셨나요?

김 봉 철
제주시 차량관리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 보유자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말소로 그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의무보험 가입은 만일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사항이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로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인 경우 처음 10일까지는 1만5000원, 10일 초과시 1일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에는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액의 75%까지 가산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영·수감·해외출장 등에 한해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을 사전에 반납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책임보험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 사항 외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회 적발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법칙금을 미납하거나 2회 이상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스스로 가입기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과태료를 방지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장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